

<협조 요청 사항>

1. 고객 대상 저작권 보호 안내
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등 저작물을 복사·스캔하거나 전자파일(PDF 등)로 제작하여 공유·전송하는 행위가 「저작권법」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특히 복사·스캔 업체 또는 무인 스캔 시설 등에서 도서 등을 대량으로 복사·스캔하여 이용하거나, 스캔한 파일을 타인에게 제공·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고객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복사·스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 내 안내문 게시, 이용화면 안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저작권 보호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불법복제물 제작·공유 방지
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 등을 복사·스캔하여 불법복제물을 제작하거나, 스캔한 도서 파일(PDF 등)을 타인에게 판매·제공·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자책 및 도서 스캔본(PDF 등)의 온라인 공유·전송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복사·스캔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

- 귀 업체의 홈페이지, 키오스크, 무인복사·스캔기기 또는 매장 내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안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울러 고객의 요청에 따른 복사·스캔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불법복제물의 제작 및 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무인 스캔방에서의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

붙임.

무인 스캔방에서의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

□ 스캔방 내 저작권 침해 유형

- ✓ 유형①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캔하는 행위
- ✓ 유형② 스캔본을 출력하거나 이를 제본하는 행위

○ 저작물에는 대부분 저작권이 존재하여,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, 저작물의 소유권이나 저작물의 양, 저작물의 형태와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.

□ 이용자 가이드라인

이용자 주의사항	✓ 이용자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행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, 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 ✓ 본인이 구매한 서적이더라도, 스캔방에서의 스캔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✓ 저작물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의 예외가 되지 않음을 숙지해야 합니다. ○ 저작권법 제30조(사적이용)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기기의 복제 행위 금지 ○ 저작권법 제35조의5(공정이용)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,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.
-------------	---

□ 운영자 가이드라인

운영자 주의사항	✓ 침해되는 저작물을 제공하거나, 허락 없는 스캔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. ✓ 이용자의 스캔을 돕는 직·간접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.
운영자 권장사항	✓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저작권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합니다. (ex 스캔파일 자동삭제 기능, 저작권 검색 기능, 스캔파일 외부유포 방지 기술 등) ✓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포스터, 문구, 안내자료 등을 비치·부착합니다.